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교보악사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명단은 교보악사자산운용㈜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5년 4월 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6월 11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140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82654
수수료선취-온라인(Ae)	82983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814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926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926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B7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79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B794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79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79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6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T6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T635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04.06)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1401)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브릭스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이하 "브릭스"라 함)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MSCI BRIC Index(KRW기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	0.99	0.42	1.75	0.9448	195	296	401	629	1,3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1)	없음	1.67	1.10	-	1.67	171	351	540	946	2,15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2%	0.67	0.10	1.28	0.5461	107	166	227	359	7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7	0.50	-	1.07	110	225	346	606	1,379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해외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

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4/04/07 ~ 2025/04/06	2023/04/07 ~ 2025/04/06	2022/04/07 ~ 2025/04/06	2020/04/07 ~ 2025/04/06	(%)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운용)	2008-04-07	24.31	13.44	7.03	6.99	2.98
비교지수	2008-04-07	19.74	11.00	5.06	5.75	1.39
수익률 변동성(%)	2008-04-07	16.79	14.84	16.43	16.82	16.86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1	2008-04-30	23.14	12.35	6.01	5.96	1.65
비교지수	2008-04-30	19.74	11.00	5.06	5.75	0.92
수익률 변동성(%)	2008-04-30	16.81	14.86	16.45	16.84	16.86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e	2008-05-08	23.51	12.70	6.34	6.29	1.74
비교지수	2008-05-08	19.74	11.00	5.06	5.75	0.63
수익률 변동성(%)	2008-05-08	16.80	14.85	16.44	16.84	16.86

주1) 비교지수 : [MSCI BRIC Index (KRW기준) * 90%] + [Call * 1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상기외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운용성과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5.04.06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영열	1973	본부장	25 개	2,260 억원	1.64	9.35	1.64	9.35	24년 1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td><td>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대상이 해외 주식인 경우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td></tr>
<tr><td>파생상품 투자위험</td><td>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주식가격 변동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이자율 변동위험</td><td>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용위험 및 부도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국가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의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td></tr>
</table>
</td></tr>
</table>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의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Tracking Error)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시장에 상당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나 매매비용 및 투자관련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DR 또는 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기의 사유로 비교지수와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보다 더 높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5시(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오후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금액 지급** ・ **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수수료	각 종류별 환매수수료는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table>
<tr><td></td><td>집합투자기구</td><td colspan="3">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td><td>수익자</td><td colspan="3">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 colspan="2">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5년 6월 11일</td><td>존속 기간</td><td colspan="2">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td></tr>
</table>
</td></tr>
</table>

		슈퍼(S)	(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기관투자자 또는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 임] 용어풀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140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82654
수수료선취-온라인(Ae)	82983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814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926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926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B7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79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B794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79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79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6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T6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T63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140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82654
수수료선취-온라인(Ae)	82983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814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926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926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B7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B79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B794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79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79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T6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T6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T63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08.04.07	최초설정
2014.06.17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해외펀드 상계 가능한 이익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부칙§74]와 관련하여 상계 가능기간 연장('10.1.1.~'14.12.31) 4)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위험(기타위험)에 관한 사항 신설 5)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14.06.01시행)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등 반영 7)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투자실적 추이,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에 업데이트
2014.09.1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01.12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확대 (채권 투자대상에 전자단기사채 추가, 환매조건부매수 신설,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 2)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14.10.01)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세부 운용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2015.10.05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Class C-F, C-P, C-P2, S, S-P 수익증권 신설 3) Class A1, Ae, Af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변경

	4) Class Af 가입자격 추가 5) 투자대상자산 확대(환매조건부매수) 6) 세부 운용전략 변경 7) 지방세법 개정('15.1.1시행) 사항 반영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에 관한 사항' 中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율 변경(14% →15.4%)"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9)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5.02.10) 사항 반영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등 10)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투자실적 추이,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에 업데이트
2016.02.04	1) 신탁업자 변경(한국씨티은행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2) 신탁업자보수율 인하(연0.06% → 연0.05%) 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6.01.21)에 따른 요약정보 신설
2016.02.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신설(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및 과세)
2016.04.0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유보가능 이익 조항 변경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준 → 차상용)
2017.02.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차상용 → 박영열)
2017.07.21	- Class Ce, Class C-Pe, Class C-P2e 신설 - 재무정보 확정에 따른 운용성과 등 업데이트
2018.05.0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추가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8.06.07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18.07.12	-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 투자신탁의 전환 구조 삭제 -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2019.03.25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2019.06.04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2020.05.22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21.01.28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아이타스 → 하나펀드서비스)
2021.04.21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3등급' 14.89%' -> 실제 수익률 변동성 '2등급' 16.0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
2022.06.03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2등급' 16.04%'-> 실제 수익률 변동성 '2등급' 17.58%')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위험문구추가
2023.05.12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2등급' 17.58%'-> 실제 수익률 변동성 '2등급' 18.17%')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제도 과세 개정사항 반영
2024.05.26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2등급' 18.17%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2등급' 36.91%')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5.06.11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변경 반영 (36.91% → 33.31%, 2등급 유지)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종류S 등 정의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종류 S, 종류 S-P 판매회사 보수 인하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대표전화 : ☎ (02) 767-9600 홈페이지 : www.kyoboaxa-im.co.kr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25.04.06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영열	1973	본부장	25 개	2,260 억원	1.64	9.35	1.64	9.35	24년 11개월	- 부산대 무역학과 - 하나대투증권 국제업무실 - 하나 UBS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 - 한국투자공사 투자전략팀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글로벌팀 -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투자분석 - 현) 교보악사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멀티에셋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한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2008.04.07 ~ 2012.03.22	김종윤
2012.03.23 ~ 2014.06.16	김후일
2014.06.17 ~ 2014.09.15	정원의
2014.09.16 ~ 2016.07.03	최준
2016.07.04 ~ 2017.1.31	차상용
2017.2.1 ~ 현재	박영열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신탁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기관투자자 또는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교보악사 파워브라질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투자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	

주 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 (이하 "브릭스"라 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MSCI BRIC Index (KRW기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투자대상 내역
①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60% 이상	브라질 관련 주식,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②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브릭스 지역에 상장된 주식 및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및 ETF 등 주로 투자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1) 교보악사 파워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브라질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브라질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 브라질 이외의 지역에 상장된 브라질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상의 주식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s)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기사채등")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 거래	100%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기준
⑥	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⑦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⑨	환매조건부매수	10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⑩	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⑪	증권의 차입	20%이하	①, ②, ③, 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⑫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 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2)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브릭스 주식 * 브릭스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브릭스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 브릭스 이외의 지역에 상장된 브릭스 지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상의 주식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s)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기사채등")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⑧	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
⑨	증권의 차입	20%이하	①, ②, ③, ④, 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⑫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 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 교보악사 파워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가.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적격요건(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평가)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동일종목투자의 한도,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2)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적격요건(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평가)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 채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에 상장된 주식 및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MSCI BRIC Index (KRW기준)'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본 운용전략

①종목선정 및 마켓타이밍을 배제한 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일관성 있는 성과를 시현합니다.

②사전에 설정된 방법론 이외에는 매매를 하지 않으므로 낮은 회전율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③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국가 ETF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으며 ETF 투자금액은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세부 운용전략]

1)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

① 주식 Universe 구성

-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주식파생, 합자회사 등을 제외한 상장주식
- 회사의 설립지가 투자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인 주식

② 유동주식수를 감안한 시가총액 결정

- 유동주식시가총액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가능 한 유통물량을 기준으로 산출
- 정부지분이나 외국인 취득제한지분을 제외함으로써 전체 발행 주식수보다는 실제 투자 가능한 주식수만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① 분기 리밸런싱

- 투자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투자 Universe(종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종목 선정
- 백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Factor 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② 월간 리밸런싱

- 구성종목의 투자적정성 여부 확인하고, 투자비중 조정

③ 수시 리밸런싱

- M&A, 부도, 분사등 다양한 이벤트 발생시 등

3)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국가별 관련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제 환헤지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투자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투자대상국 통화 또는 벤치마크인 MSCI BRIC Index 의 기준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모투자신탁이 직접 투자하는 외화 표시 유가증권의 원화 가치가 변동되거나 MSCI BRIC Index 와의 추적오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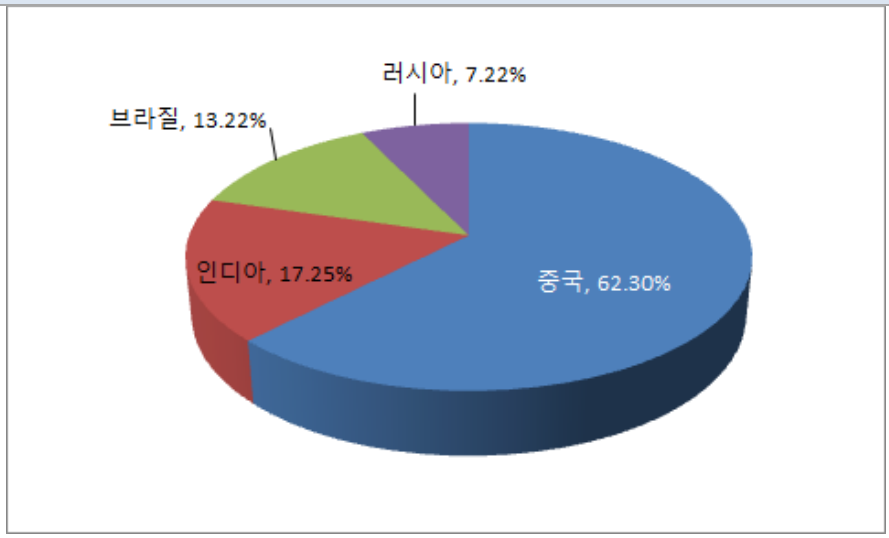
(3)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MSCI BRIC Index (KRW기준) * 90%] + [Call * 10%]**로 정했습니다.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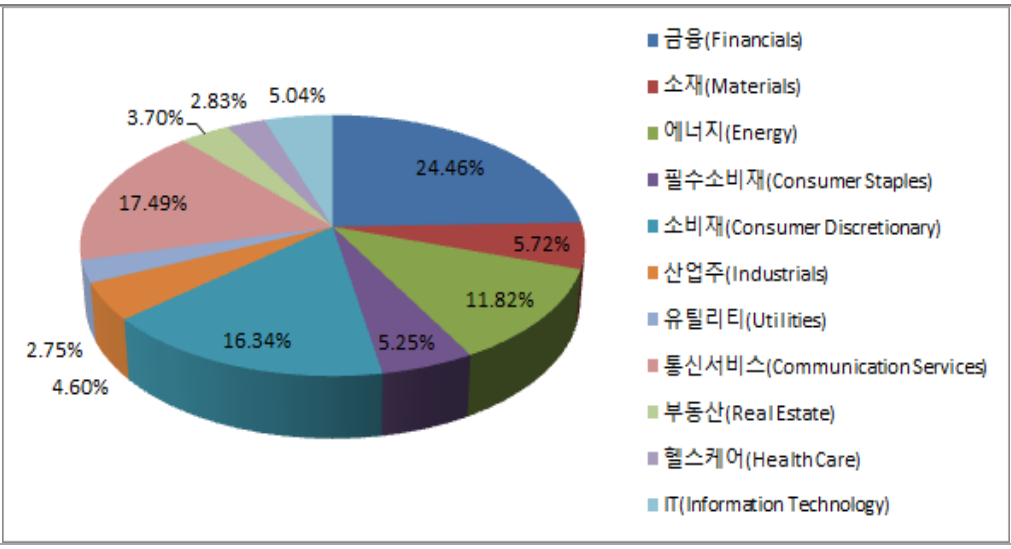
[MSCI BRIC Index] (2019.4.30 기준)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만든 모델 포트폴리오 지수 중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포함) 관련 주식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포함) 주식시장의 유동주식수를 고려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종목 산정 및 비중이 결정됩니다. 상기 지수현황은 http://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별 비중



섹터별 비중



-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MSCI Brazil Index (KRW기준) *90% + Call 10%
교보악사 파워 브릭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MSCI BRIC Index (KRW기준 * 90% + Call 10%

[브릭스 국가 현황]

① 브라질

일반사항	**면적**	851 만 1,965 ㎢(세계 5 위, 남미 대륙의 47.7%)
	인구	2 억 1,072 만 2,000 명
경제지표	**GDP**	2조 3,454억 달러(2014년), 1조 9,039억 달러(2015년), 1조 7,994억 달러(2016년), 2조 552억 달러(2017년)
	실질경제성장률	0.1%(2014년), -3.8%(2015년), -3.6%(2016년), 1%(2017년)
	1인당 GDP	1만 2,106달러(2014년), 8,785달러(2015년), 8,720달러(2016년), 9,896달러(2017년)
	실업률	4.8%(2014년), 6.9%(2015년), 12%(2016년), 12.7%(2017년)
	물가 상승률	6.4%(2014년), 10.7%(2015년), 6.1%(2016년), 2.95%(2017년)
	화폐 단위	Real(헤알화)
	환율	US$ 1 = 3.7헤알(2018년 7월 기준)
	외채	3,221억 달러(2018년 5월 기준)
	외환 보유고	3,792억 달러(2018년 7월 기준)
	산업 구조	- 상강하박형 산업구조,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 발달

		- 세계적 다국적기업 진출 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 - 현지투자 역사가 50년이 넘는 기업 다수 존재 - 달러 강세로 수입 감소, 전반적인 경제불황 - 중산층의 하락으로 내수소비 감소, 인플레 상승
	교역 규모	- 수출: 2,251 억 달러(2014 년), 1,913 억 달러(2015 년), 1,852 억 달러(2016 년), 2,177 억 달러(2017 년), 1137(2018 년 1-6 월) - 수입: 2,291 억 달러(2014 년), 1,714 억 달러(2015 년), 1,375 억 달러(2016 년), 1,507 억 달러(2017 년), 838 억 달러(2018 년 1-6 월) - 수지: -40억 달러(2014년), 197억 달러(2015년), 477억 달러(2016년), 670억 달러(2017년), 299억 달러(2018년 1-6월)
	주요 교역품	- 수출품: 기계류, 자동차, 철강, 육류, 곡물, 철광석, 광물성연료, 사료, 항공기, 전기기기, 목재, 설탕, 신발, 커피, 알루미늄 - 수입품: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유기화학품,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제품, 의료용품
한-브라질 관계	**교역 규모**	- 수출: 89억 2,200만 달러(2014년), 54억 9,400만 달러(2015년), 44억 5,700만 달러(2016년), 55억 500만 달러(2017년), 26억 5,750만 달러(2018년 1-6년) - 수입: 49억 700만 달러(2014년), 40억 5,900만 달러(2015년), 34억 4,472만 달러(2016년), 36억 137만 달러(2017년), 18억 8,486만 달러(2018년 1-6월) - 수지: 40억 1,500만 달러(2014년), 14억 3,500만 달러(2015년), 11억 472만 달러(2016년), 18억 386만 달러(2017년), 7억 7,266만 달러(2018 1-6월)
	교역품	-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철강제품, 합성수지, 건설 광산 기계, 평판 디스플레이스, 섬유사 - 대브라질 주요 수입품: 철광, 사료, 대두, 면, 옥수수, 동광, 합급철, 닭고기, 펄프
	투자 교류	- 대브라질 투자 신고액: 5억 1,021만 달러 (2017년 연간 누적 기준) - 대브라질 투자 금액: 4억 5,895만 달러(2016년 연간 누적 기준)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POSCO, CJ,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진출은 매우 미미한 실정

② 러시아

	구분	구분
일반 사항	**위치**	유라시아 대륙
	면적	1,712만 5,407㎢[세계 1위](한반도의 77.6배, 미국의 1.8배)
	인구	1억 4,700만 명(2018년 1월 1일 기준)
경제	**GDP**	100조 5,190억 루블(2018), 88조1,770억 루블(2017년), 86조 436억 루블

사항		(2016년), 83조 2,326억 루블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	1.9%(2018년), 1.6%(2017년), -0.2%(2016년), -2.8%(2015년), 0.8%(2014년)
	1인당 GDP	10,655달러(2018), 10,654달러(2017), 10,986달러(2016년), 9,099달러(2015년), 12,972달러(2014년)
	실업률	5.4%(2018년), 5.4%(2017년), 5.8%(2016년), 5.6%(2015년)5.2%(2014년)
	물가상승률	3.1%(2018년), 2.5%(2017년), 5.4%(2016년), 12.9%(2015년), 11.4%(2014년)
	화폐단위	루블(ruble)
	환율	1달러= 62.43루블(2018년), 58.53루블(2017년), 67.05루블(2016년), 61.34루블(2015년)
	외채	5,312억달러(2018년), 5,375억 달러(2017년), 5,141억 달러(2016년), 5,191억달러(2015년), 5,999억 달러(2014년)
	외환보유고	4,542 억 달러(2018년), 4,248억 달러(2017 년10월), 3,777억 달러(2016 년), 3,683억달러(2015년), 3,854억 달러(2014년)
	산업구조	주력 산업: 천연가스, 석유, 화학, 금속, 석탄, 방산, 우주항공, 핵에너지
	교역규모	- 수출: 3,354억 달러(2018년), 3,343억 달러(2017년), 2,885억 달러(2016년), 3,519억 달러(2015년) - 수입: 2,221억 달러(2018년), 2,107억 달러(2017년)1,798억 달러(2016년), 1,953억 달러(2015년),
	교역품	- 수출 : 유연탄,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무연탄, 알류미늄괴 및 스크랩 등 - 수입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 철구조물 및 건설 장비, 합성수지 등
한-러 관계	**한-러 교역규모**	- 2018년 1~6월: 119억 달러, (수출) 38억 2000만 달러, (수입) 80억 7,000만 달러 - 2017: 192억 달러, (수출) 69억 달러, (수입) 123억 달러 - 2016년: 134억 달러, (수출) 47억 6,900만 달러, (수입) 86억 4,000만 달러 - 2015년: 160억 달러, (수출) 46억 9,000만 달러, (수입) 113억 1,000만 달러
	교역품	- 수출 :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및 건설 장비,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등 - 수입 : 원유,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무연탄, 알류미늄괴 및 스크랩 등
	투자교류	- 對러 투자 : 8,179만 달러(2017) 1억1,044만 달러(2016년), 1억7,812만 달러(2015년), 1억1,403만 달러(2014년) - 對한 투자 : 723만 달러(2017년), 397만 달러(2016년), 562.1만 달러(2015년), 397만 달러(2014년)

③ 인도

	구분	구분
일반 사항	**위치**	남아시아(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적	328만 7,260㎢(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인구	13 억 1,689 만 명(2017 년) * IMF-WEO 2018.4 월
경제 사항	**GDP**	2조 6,110억 달러(2017년) * IMF 2018년 4월
	실질경제성장률	6.74%(2017년) * IMF 2018년 4월
	1인당 GDP	1,982달러(2017년) * IMF 2018년 4월
	실업률	3.52%(2017년) * CEIC
	물가상승률	3.6%(2017년) * IMF 2018년 4월
	화폐 단위	Rupee, Paise
	외채	4,858억 달러(2017년 6월) * RBI
	외환보유고	4,131.09억 달러(2018년 6월) * RBI
	산업구조	서비스업(53.66%), 건설업(7.74%), 유틸리티(2.46%), 제조업(16.57%), 광업(2.25%), 농업(17.32%) (2016-17 회계연도) * 인도 통계실행부
	교역규모	- 2017년 : (수출) 2,966억 달러 / (수입) 4,469억 달러 - 2016년 : (수출) 2,646억 달러 / (수입) 3,617억 달러 - 2015년 : (수출) 2,679억 달러 / (수입) 3,941억 달러 * GTA
	교역품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 합성연료, 기타기계류, 기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금형 등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합금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천연섬유사,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곡실류, 아연제품 등
한-인 관계	**교역규모**	- 2017년: (수출) 150.5억 달러, (수입) 49.4억 달러 - 2016년: (수출) 115.9억 달러, (수입) 41.8억 달러 - 2015년: (수출) 120.2억 달러, (수입) 42.3억 달러 - 2014년: (수출) 127.8억 달러, (수입) 52.7억 달러
	주요 교역품	- 수출품(2017년): 무선중계기, 자동차부품, 금은세공품, 철비합금, 기타 석유제품 등 - 수입품(2017년): 나프타, 알루미늄괴, 기타합금철, 기타정밀화학, 아연괴 * 무역협회 MTI
	투자교류	한국의 대인도 투자(2018년 3월까지 누적액, 신고기준) - 건수/총액: 3,159건, 70.9억 달러 - 주요 업종: 제조업(81.81%), 금융업(5.41%), 도소매업(5.16%) 등 인도의 대한국 투자 (2016년 상반기 누적) - 총액: 1억 1,801억 달러 - 주요 업종: 운송용 기계 60%(쌍용 마힌드라, 타타 대우 상용차), 서비스(17.9%) 등

④ 중국

<table>
<tr><th></th><th>구분</th><th>구분</th></tr>
<tr><td rowspan="3">일반
사항</td><td>위치</td><td>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남북 위도차 약 49도, 동서 경도차 약 62도)</td></tr>
<tr><td>면적</td><td>약 960만 ㎢(*면적: 세계 제4위, 한반도의 약 44배)</td></tr>
<tr><td>인구</td><td>13 억 9,008 만 명(2017 년 말 기준)(*인구 세계 1 위)</td></tr>
<tr><td rowspan="11">경제
사항</td><td>GDP</td><td>'10년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
('16) 74조 4,127억 위안 → ('17) 82조 7,122억 위안</td></tr>
<tr><td>경제성장률</td><td>경기둔화세 지속, '15년 3분기부터 7% 이하
('16) 6.7% → ('17) 6.9%</td></tr>
<tr><td>1인당 GDP</td><td>1인당 GDP 8,000 달러 초과
('16) 53,817 위안 (약 $ 8,026 달러)→ ('17) 59,660 위안 (약 $ 8,836달러)</td></tr>
<tr><td>실업률</td><td>'도시지역 등록 실업률(城鎭登記失業率)'로 표시, 4% 내외 유지
('15) 4.05% → ('16) 4.1% → ('17) 3.9%</td></tr>
<tr><td>물가상승률</td><td>'주민소비가격지수(居民消費價格指數)'로 표시, '15년 이후 2% 이하
('15) 1.4% → ('16) 2.0% → ('17) 1.6%</td></tr>
<tr><td>화폐단위</td><td>위안(元), 인민폐(RMB)라고도 함.</td></tr>
<tr><td>외채</td><td>US$ 1조 7,106억 불 ('17년 말)</td></tr>
<tr><td>외환보유고</td><td>US$ 3조 1,399억 불 ('17년 말)</td></tr>
<tr><td>산업 구조</td><td>'15년 서비스산업 비중 50% 초과
('16년) 1차산업 8.6%, 2차 산업 39.8%, 3차 산업 51.6%
('17년) 1차산업 7.9%, 2차 산업 40.5%, 3차 산업 51.6%</td></tr>
<tr><td>교역 규모</td><td>(단위: USD)
<table>
<tr><th></th><th>교역량
(증감률)</th><th>수출
(증감률)</th><th>수입
(증감률)</th><th>무역수지
(증감률)</th></tr>
<tr><td>2016년</td><td>3조 6,600억(5.7%↓)</td><td>2조 1,353억(6.4%↓)</td><td>1조 5,247억(4.8%↓)</td><td>6,106억(10.4%↓)</td></tr>
<tr><td>2017년</td><td>4조 692억(11.2%↑)</td><td>2조 2,792억(6.7%↑)</td><td>1조 7,900억(17.4%↑)</td><td>4,892억(19.9%↓)</td></tr>
</table></td></tr>
<tr><td>주요 교역품</td><td>수출품: 전기전자, 집적회로, 건축자재, 의류, 방직 및 직물제품, LCD 등
수입품: 전기전자, 원유, 집적회로(IC), LCD, 철광석, 농산품 등</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한-중
관계</td><td>한·중
교역 규모</td><td>(단위: US$)
<table>
<tr><th></th><th>양국 교역량
(증감률)</th><th>대중(對中) 수출
(증감률)</th><th>대중(對中) 수입
(증감률)</th><th>무역수지
(증감률)</th></tr>
<tr><td>2013년</td><td>2,289억
(6.4%↑)</td><td>1,459억
(8.6%↑)</td><td>831억
(2.8%↑)</td><td>628억
(17.3%↑, 한국 흑자)</td></tr>
<tr><td>2014년</td><td>2,353억
(2.8%↑)</td><td>1,453억
(0.4%↓)</td><td>901억
(8.5%↑)</td><td>552억
(12.1%↓, 한국 흑자)</td></tr>
<tr><td>2015년</td><td>2,274억
(3.3%↓)</td><td>1,371억
(5.6%↓)</td><td>903억
(0.2%↑)</td><td>468억
(15.2%↓, 한국 흑자)</td></tr>
<tr><td>2016년</td><td>2,114억
(7.0%↓)</td><td>1,244억
(9.2%↓)</td><td>870억
(3.6%↓)</td><td>374억
(20.1%↓, 한국 흑자)</td></tr>
<tr><td>2017년</td><td>2,400억
(13.5%↑)</td><td>1,421억
(14.2%↑)</td><td>979억
(12.5%↑)</td><td>443억
(18.2%↑, 한국 흑자)</td></tr>
</table>자료: 한국 관세청</td></tr>
<tr><td>주요 교역품</td><td>대중 수출품: 전기전자, 반도체, LCD,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대중 수입품: 전기전자, 반도체, 철강, LCD 등</td></tr>
<tr><td>투자교류</td><td>한국의 대중(對中) 투자
- 2017년 말 기준 (누계): 총 596억 3,733만 달러(* 57,689건)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 2017년 말 기준 (누계): 총 91억 7,863만 달러 (* 5,766건)</td></tr>
</table>

주1)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2) 상기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제현황은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험관리

①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나 매매비용 및 투자관련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기의 사유로 비교지수와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② 오퍼레이션 위험 관리 방안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보다 더 높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을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대상이 해외 주식인 경우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의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의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Tracking Error)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 주식시장에 상당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나 매매비용 및 투자관련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DR 또는 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기의 사유로 비교지수와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보다 더 높습니다.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펀드의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외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

	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수준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대만, 싱가포르 포함)]의 주식 및 ETF 등에 주로 투자하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국가의 주식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VaR')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33.31%**으로, **2등급(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변경
2021.04.21	**3등급 →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변경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시장위험 기준에 의한 것이며, 투자전략, 환율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및 파생상품 위험, 환변동성 노출여부 및 시장상황, 실제 상품특성에 따라 최종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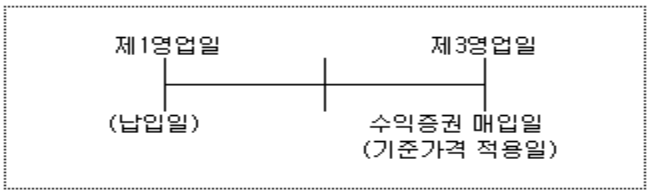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이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의 법령에 의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납입 건별 납입금액이 5억원 미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납입 건별 납입금액의 5억원 이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의 법령에 의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변액보험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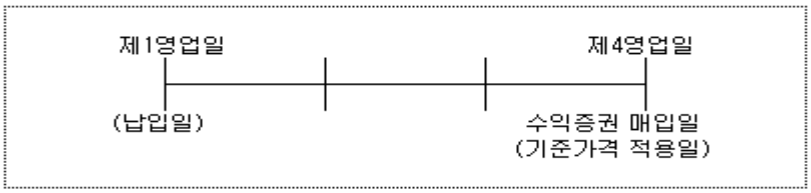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오후5시(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오후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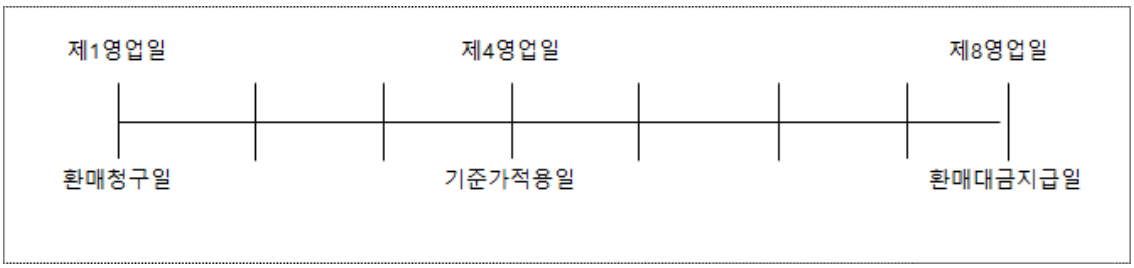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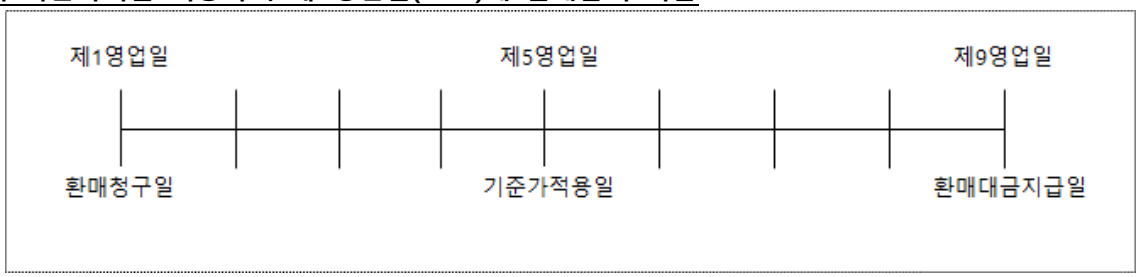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8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9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지급시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주 1) 다만,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함.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9) 수익증권 부분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자세한 정보는 (4)환매수수료 또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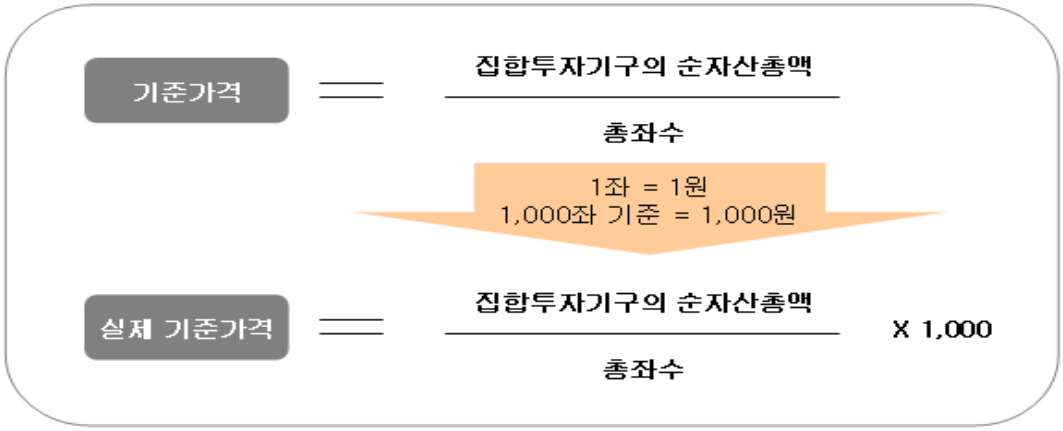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	O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①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①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⑨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2%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납입금액의 0.02%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없음

			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없음	6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없음	없음	6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없음	없음	6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종류(Class)별로 가입자격 및 수수료, 보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가입자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Class를 다수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2) Class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증권거래비용

									보수포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0.50	0.42	0.05	0.02	0.99	0.00	0.99	**1.75**	0.9448	0.066
수수료선취-온라인(Ae)	0.50	0.10	0.05	0.02	0.67	0.00	0.67	**1.28**	0.5461	0.0722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0.50	0.00	0.05	0.02	0.57	0.0021	0.5721		0.5277	0.06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0.50	1.10	0.05	0.02	1.67	-	1.67		1.6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0.50	0.32	0.05	0.02	0.89	-	0.89		0.89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0.50	0.00	0.05	0.02	0.57	-	0.57		0.5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50	0.80	0.05	0.02	1.37	-	1.37		1.3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0.50	0.79	0.05	0.02	1.36	-	1.36		1.36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50	0.08	0.05	0.02	0.65	-	0.65		0.6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50	0.07	0.05	0.02	0.64	-	0.64		0.64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50	0.50	0.05	0.02	1.07	-	1.07		1.0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50	0.40	0.05	0.02	0.97	-	0.97		0.9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50	0.39	0.05	0.02	0.96	-	0.96		0.96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4.07~2025.04.06]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타비용예시: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4.07~2025.04.06]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금융비용 예시: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REPO지급이자, 차입금지급이자, 대여금이자비용, 차입채권지급이자 등 각종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라 모펀드의 매매수수료 및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8,613,134
금융비용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국내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주1)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①'의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주1)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외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호를 의미합니다.
①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② 보관비용(Safe-Keeping Fee)
③ 기타 부수비용 등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9	305	416	654	1,3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5	296	401	629	1,305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0	192	267	429	91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7	166	227	359	7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9	120	185	324	7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4	111	171	299	6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1	351	540	946	2,15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1	351	540	946	2,1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1	186	285	495	1,1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188	288	500	1,1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8	119	183	319	71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9	122	186	325	7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	286	437	754	1,6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1	288	440	760	1,6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4	433	749	1,64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40	286	437	754	1,65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7	137	210	368	8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7	137	210	368	8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6	134	207	363	8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6	134	207	363	8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225	346	606	1,3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0	225	346	606	1,3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9	203	310	539	1,1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9	203	310	539	1,1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201	307	533	1,18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8	201	307	533	1,18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C1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매년 판매보수가 인하됨을 감안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 년 4 월 1 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

도 불구하고 과세대항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항 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①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Class C-P2 및 Class S-P 수익증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

	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만원 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나이별로 5.5~3.3% 원천징수하고, 1,5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7)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5기(2022.04.07 ~ 2023.04.0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6기(2023.04.07 ~ 2024.04.0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7기(2024.04.07 ~ 2025.04.0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5.04.06	2024.04.06	2023.04.06
운용자산	13,534,419,274	13,129,865,105	14,064,417,714
유가증권	13,284,221,442	12,969,066,576	13,923,465,99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50,197,832	160,798,529	140,951,72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38,997,908	17,178,987	23,413,039
자산총계	13,673,417,182	13,147,044,092	14,087,830,75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28,826,642	4,575,793	174,386,475
부채총계	928,826,642	4,575,793	174,386,475
원본	10,067,354,383	12,028,657,618	13,182,509,14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2,677,236,157	1,113,810,681	730,935,131
자본총계	12,744,590,540	13,142,468,299	13,913,444,278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5.04.06	2024.04.06	2023.04.06
운용수익	2,770,083,032	443,474,902	-707,486,631
이자수익	9,545,179	4,704,918	3,078,391
배당수익	632,201,724	0	172,404,030
매매평가차손익	2,128,336,129	438,769,984	-882,969,05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2,770,083,032	443,474,902	-707,486,631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7기 0원 16기 0원 15기 0원)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7기 0원 16기 0원 15기 0원)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5.04.06	2024.04.06	2023.04.06
운용자산	13,534,419,274	13,129,865,105	14,064,417,714
현금및예치금	250,197,832	160,798,529	140,951,720
현금및현금성자산	250,197,832	160,798,529	140,951,720
정기예금	0	0	0
증거금	0	0	0
기타예금	0	0	0
대출채권	0	0	0
콜론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매입어음	0	0	0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3,284,221,442	12,969,066,576	13,923,465,994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13,284,221,442	12,969,066,576	13,923,465,99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건물	0	0	0
토지	0	0	0
건설중인자산	0	0	0
농산물	0	0	0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38,997,908	17,178,987	23,413,039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8,907,094	17,099,954	23,343,819
정산미수금	0	0	0
미수이자	90,814	79,033	69,220
미수배당금	0	0	0
선급비용	0	0	0
선납세	0	0	0
외화환산손익조정	0	0	0
기타미수입금	0	0	0
자 산 총 계	13,673,417,182	13,147,044,092	14,087,830,753
운용부채	0	0	0
옵션매도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기타부채	928,826,642	4,575,793	174,386,475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정산미지급금	0	0	0
해지미지급금	0	1	4,497,248
미지급운용수수료	0	0	0
미지급판매수수료	0	0	0
미지급수탁수수료	0	0	0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0	0	0
수수료미지급금	0	0	0
차입금	0	0	0
기타미지급금	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928,826,642	4,575,792	169,889,227
부 채 총 계	928,826,642	4,575,793	174,386,475
원 본	10,067,354,383	12,028,657,618	13,182,509,147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2,677,236,157	1,113,810,681	730,935,131
자 본 총 계	12,744,590,540	13,142,468,299	13,913,444,278
부채 및 자본 총계	13,673,417,182	13,147,044,092	14,087,830,753
총좌수	10,067,354,383	12,028,657,618	13,182,509,147
기준가격	1265.93	1092.60	1055.4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4.04.07 ~ 2025.04.06	**2023.04.07 ~ 2024.04.06**	**2022.04.07 ~ 2023.04.06**
운용수익(운용손실)	2,770,083,032	443,474,902	-707,486,631
투자수익	641,746,903	4,704,918	175,482,421
이자수익	9,545,179	4,704,918	3,078,391
배당금수익	632,201,724	0	172,404,030
수수료수익	0	0	0
임대료수익	0	0	0
기타투자수익	0	0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167,382,297	463,624,883	14,185,674
지분증권매매차익	96,630,785	6,551,086	0
채무증권매매차익	0	0	0
파생상품매매차익	0	0	0
외환거래매매차익	0	0	0
지분증권평가차익	2,070,751,512	457,073,797	14,185,674
채무증권평가차익	0	0	0
파생상품평가차익	0	0	0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9,046,168	24,854,899	897,154,726
지분증권매매차손	12,760,193	24,854,899	15,096,497
채무증권매매차손	0	0	0
파생상품매매차손	0	0	0
외환거래매매차손	0	0	0
지분증권평가차손	26,285,975	0	882,058,229
채무증권평가차손	0	0	0

파생상품평가차손	0	0	0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기타손실	0	0	0
기타운용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운용수수료	0	0	0
판매수수료	0	0	0
수탁수수료	0	0	0
사무수탁수수료	0	0	0
매매수수료	0	0	0
이자비용	0	0	0
임대자산관련비용	0	0	0
기타운용비용	0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0	0	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0.00	0.00	0.0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770,083,032	443,474,902	-707,486,631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265.54	35.89	-53.22

라.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 원)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8,188,282,848	6,645,302	0.08	2,681,890,574	2,857,817	0.11
주식 이외의 증권	2,954,016,870	1,967,830	0.07	6,915,935,213	5,022,827	0.07
합 계	11,142,299,718	8,613,132	0.08	9,597,825,787	7,880,644	0.08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마.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원]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90,815	3,405,594,449	883,172	4,782,688,398	5,889,936,800	81.20	32.12

(주 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운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4/07~2023/04/06	13,431	15,060	89	100	544	601	13,183	14,083
2023/04/07~2024/04/06	13,183	13,913	280	291	1,595	1,670	12,029	13,147
2024/04/07~2025/04/06	12,029	13,142	11	12	1,976	2,256	10,067	13,673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종류형펀드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1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4/07~2023/04/06	10	10	0	0	0	0	10	10
2023/04/07~2024/04/06	10	10	0	0	0	0	10	10
2024/04/07~2025/04/06	10	10	0	0	0	0	10	12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4/07~2023/04/06	36	39	3	3	8	8	31	32
2023/04/07~2024/04/06	31	32	2	2	4	4	29	30
2024/04/07~2025/04/06	29	30	11	12	17	20	23	3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f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4/07~2023/04/06	13,993	15,125	0	0	390	414	13,693	14,022
2023/04/07~2024/04/06	13,693	13,933	202	200	1,490	1,501	12,492	13,089
2024/04/07~2025/04/06	12,492	13,089	0	0	1,983	2,163	10,509	13,612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 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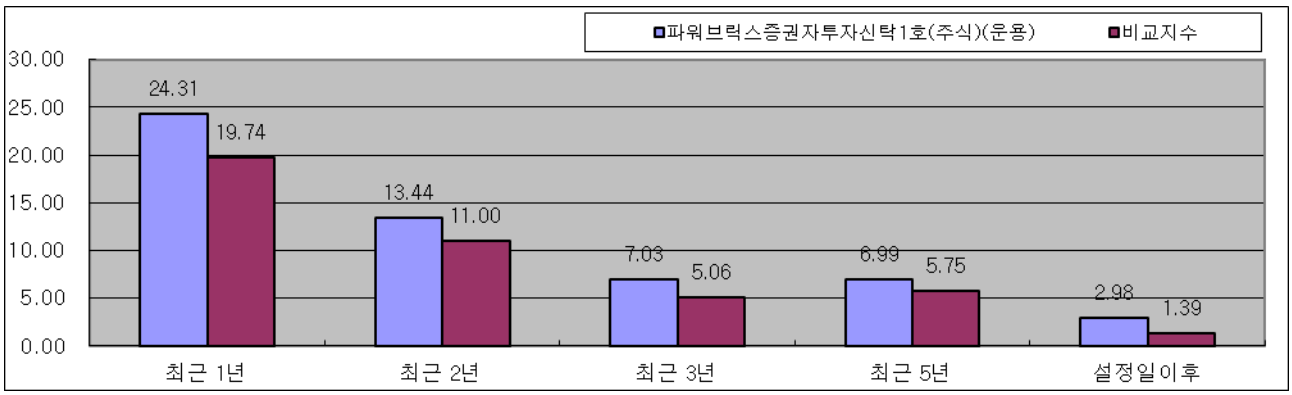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4/04/07 ~ 2025/04/06	2023/04/07 ~ 2025/04/06	2022/04/07 ~ 2025/04/06	2020/04/07 ~ 2025/04/06	(%)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운용)	2008-04-07	24.31	13.44	7.03	6.99	2.98
비교지수	2008-04-07	19.74	11.00	5.06	5.75	1.39
수익률 변동성(%)	2008-04-07	16.79	14.84	16.43	16.82	16.86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1	2008-04-30	23.14	12.35	6.01	5.96	1.65
비교지수	2008-04-30	19.74	11.00	5.06	5.75	0.92
수익률 변동성(%)	2008-04-30	16.81	14.86	16.45	16.84	16.86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e	2008-05-08	23.51	12.70	6.34	6.29	1.74
비교지수	2008-05-08	19.74	11.00	5.06	5.75	0.63
수익률 변동성(%)	2008-05-08	16.80	14.85	16.44	16.84	16.86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f	2008-04-07	23.63	12.81	6.44	6.39	2.39
비교지수	2008-04-07	19.74	11.00	5.06	5.75	1.39
수익률 변동성(%)	2008-04-07	16.80	14.85	16.44	16.83	16.87

주 1) 비교지수 = [MSCI BRIC Index (KRW 기준) * 90%] +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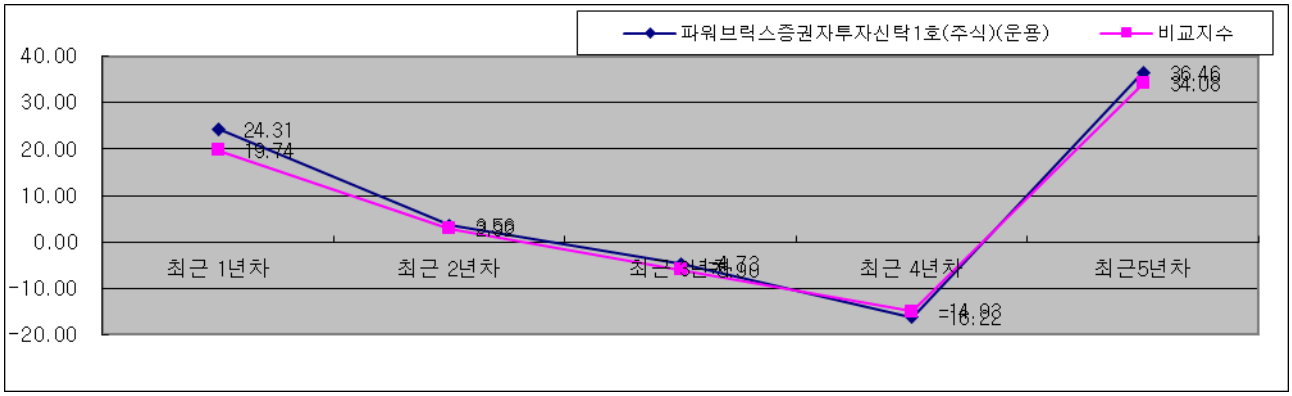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4/04/07 ~ 2025/04/06	2023/04/07 ~ 2024/04/06	2022/04/07 ~ 2023/04/06	2021/04/07 ~ 2022/04/06	2020/04/07 ~ 2021/04/06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운용)	2008-04-07	24.31	3.56	-4.73	-16.22	36.46
비교지수	2008-04-07	19.74	2.92	-5.90	-14.93	34.08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1	2008-04-30	23.14	2.55	-5.64	-17.06	35.15
비교지수	2008-04-30	19.74	2.92	-5.90	-14.93	34.08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e	2008-05-08	23.51	2.87	-5.35	-16.79	35.57
비교지수	2008-05-08	19.74	2.92	-5.90	-14.93	34.08
파워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ClassAf	2008-04-07	23.63	2.97	-5.26	-16.71	35.70
비교지수	2008-04-07	19.74	2.92	-5.90	-14.93	34.08

주1) 비교지수 = [MSCI BRIC Index (KRW기준) * 90%] +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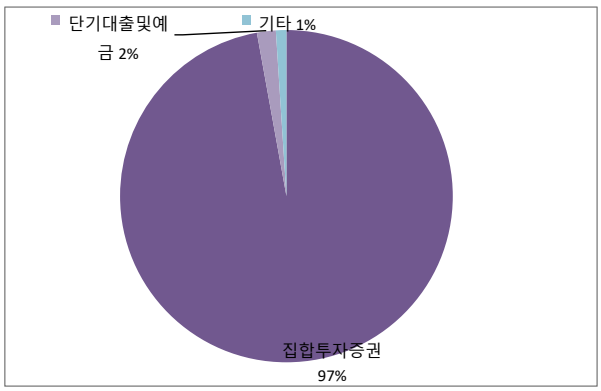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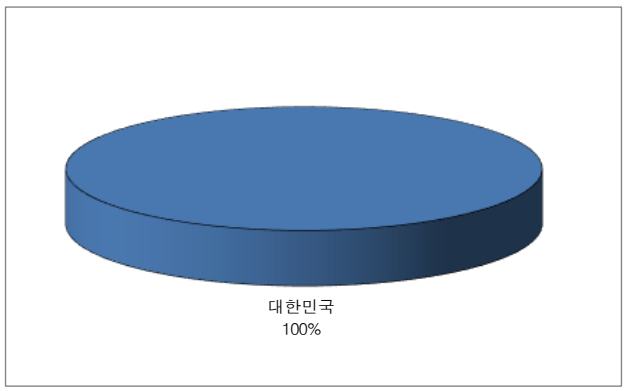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04.06 현재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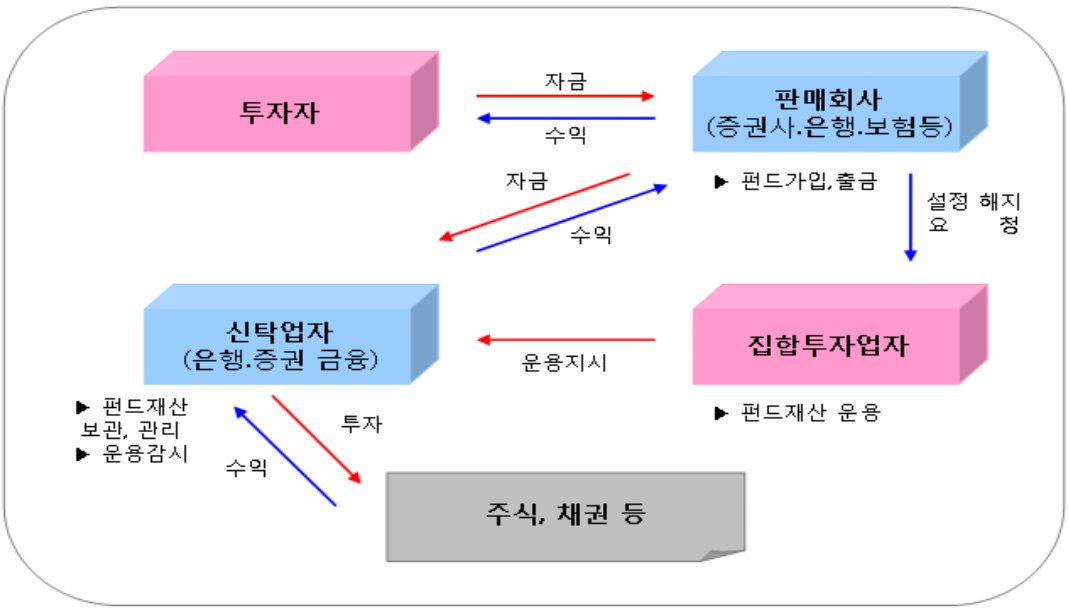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13,284	0	0	0	0	0	250	139	13,673
	(0.00)	(0.00)	(0.00)	(97.15)	(0.00)	(0.00)	(0.00)	(0.00)	(0.00)	(1.83)	(1.02)	(100.00)
자산합계	0	0	0	13,284	0	0	0	0	0	250	139	13,673
	(0.00)	(0.00)	(0.00)	(97.15)	(0.00)	(0.00)	(0.00)	(0.00)	(0.00)	(1.83)	(1.02)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02) 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하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악사자산운용㈜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4.12.31**	**'23.12.31**	**항 목**	**'24.01.01~ '24.12.31**	**'23.01.01~ '23.12.31**
현금 및 예치금	557	529	영업수익	433	411
유가증권	54	40	영업비용	259	253
대출채권	3	3	영업이익	174	158
유형자산	49	62	영업외수익	0	0
기타자산	132	142	영업외비용	0	0
자산총계	795	776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174	158
예수부채	0	0			
기타부채	129	127	당기순이익	141	125
기타부채	129	127			
자본금	300	3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366	34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자본총계	666	649			
부채 및 자본총계	795	776			

라. 운용자산규모 (2025.04.06기준 / 단위: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467	78,388	5,825	0	5,770	15,012	0	240	13,759	864	111,740	240,06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신탁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 2004-8963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①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의무와 책임

[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1) 최초설정일부터 2021 년 2 월 1 일까지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aitas.co.kr

(2) 2021 년 2 월 2 일부터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 : 02-6714-46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is.com

나. 주요업무

①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회사연혁	2000년 5월 설립

회 사 명	NICE피앤아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회사연혁	2000년 6월 설립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사연혁	2000년 6월 설립

회 사 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02-721-5300
홈페이지 참조	www.fnpricing.com
회사연혁	2011년 6월 설립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단,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제4 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 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②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 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경우에 한한다)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거래	1) 일반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2) Cyber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3) 일반채권 매매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 4) 신규 발행 채권 인수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

	5) 외화표시채권 매매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 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